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존경하는 김 정 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1선거구 출신 이 창 섭 의원입니다.

이렇게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러 선진국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계획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도입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살펴보면, 시민참여와 의견청취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일부 표기상 오류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조성 정책 및 기본계획수립에 시민의 참여와 의견청취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고 표기상 오류를 수정하는 조례 개정을 제안합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